

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69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18년 8월 16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노인보호 관련 전문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학대피해 어르신에 대한 상담·보호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자,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 개요

- 사업명 :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
- 기관소재지 : 서초구 남부순환로 2124 (방배동)
- 운영법인 : 재단법인 천주교까리따스수녀회유지재단
- 운영인력 : 9명 (기관장 1명, 상담원 8명)

나. 주요위탁 내용

- 위탁기간 : 2017.10.1.~2022.9.30.(5년)
- 위탁사무
 - 노인학대 상담 및 가해행위 신고·접수 및 사례판정
 - 현장조사 및 사례조치, 사후관리
 -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기관에 대한 상담
 - 어르신 학대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홍보·교육 등
- 관할구역 : 강남구 등 13개 자치구(강남지역)
- '18년 예산액 : 384,870천원 (국비 183,150천원 / 시비 201,720천원)

다. 민간위탁 추진경위

- '05.1.1. : 최초 지정
- '17.4.24. : 운영방식에 대한 법률자문 회신('위탁'이 타당)
- '17.8.16. :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
- '17.8.18. : 재계약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(적격)
- '17.9.30. : 협약 체결

⇒ 구(舊)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정·운영하다가, 개정 노인복지법에 따른 위탁 운영이 타당하다는 법률자문 결과('17.4.24.)에 따라 '위탁으로 전환'하여 재계약 절차를 진행함

라.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(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) 제③항
-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6 (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) 제①항

마. 민간위탁 추진필요성

- 인구 고령화와 어르신 부양 부담 등 가족간의 갈등으로 어르신 학대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
- 학대피해 어르신의 인권 보호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은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(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) 제③항 :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·도지사는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-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6 (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) 제①항 : 법 제39조의 5 제3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,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시·도지사에게 위탁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돌봄팀 임승현 (☎2133 - 7415)